

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18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청사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, 장애인, 모·부자가정, 국가유공자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우선계약 대상자 및 적용 대상 공공청사의 범위를 정함 (안 제2조, 제3조).
- 나. 자판기등의 신규 설치 및 종전 계약자의 변경시 시보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하도록 함 (안 제4조).
- 다. 우선계약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함 (안 제6조).
- 라.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함 (안 제8조).
- 마.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노인복지법 제25조, 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, 모·부자복지법 제15조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3. 3. 18 ~ 2003. 4. 7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(이하 “자판기등”이라 한다)를 설치·계약하고자 할 때에 노인·장애인·모·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·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“생업지원대상자”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,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, 모·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,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의 범위) ① 생업지원대상자에게 자판기등의 설치를 우선계약 하는 공공 청사의 범위는 시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사전공고)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·시홈페이지·반상회보·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신청) ①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의 설치시 우선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생업지원 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.

② 자판기등의 우선설치계약(이하 “우선계약”이라 한다)을 희망하는 생업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 (우선계약) ① 시장이 제5조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지원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한다.

② 우선계약을 신청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
2. 부양가족이 많은 자

③ 제2항에 의하여도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 우선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 (의무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우선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월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우선계약의 해지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자판기등의 관리를 태만이 한 경우
3.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
4. 설치계약을 한 자가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
5. 기타 우선계약자가 자판기등의 운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.

다만, 우선계약자가 사망등으로 자판기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계약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이 조례에 의한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9조 (사용료 등) 자판기등의 설치에 따른 공공청사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·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여성과
임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여성과장 최 병 턱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담당 김 대 환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장 유 경 (행정 2865)

(별지 서식)

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(제5조제2항 관련)

신 청 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명칭(상호)		영업의 종류	매점,자동판매기
	영업장소			
	설치대수	자동판매기	대(커피, 음료수 등)	

안산시공공청사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5조의
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○○○ 장 귀하

비고		관련공부확인필		확인자	
				직	성명
		경로연금지급대상자			
		등록장애인			
		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			
		모·부자가정대상자			
국가유공자대상자					